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
----------	---

제출년월일 : 2002. 7. 15.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사유

- 을숙도문화회관의 신설에 따라 사업소의 장의 공인 비치사용 조항 신설
- 용어의 정의에 맞게 「소속행정기관장」을 「직속행정기관장」으로 변경
- 추후 민원발급에 대비하여 직속행정기관장, 사업소장의 민원실전용 공인의 사용란 신설

2. 주요골자

- 사업소의 장의 공인 비치 사용 조항 신설(제1조, 제2조 제1항, 제6조 제2항)
- 직속행정기관장으로 용어 변경(제1조, 제2조 제1항 내지 제2항, 제2조 제7항, 제6조 제2항)
- 직속행정기관장, 사업소장의 민원실전용 공인 비치 조항 신설(제2조 제3항)
- 사업소의 공인관수자 지정(제13조 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35조, 제36조, 제41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부산광역시사하구 공인조례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 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중 “사하구공인(소속행정기관, 동 및 기관장의 보좌·보조기관)을 “사하구공인(직속행정기관, 사업소, 동 및 기관장의 보좌·보조기관”으로 한다.

제2조 제1항 본문중 “구청장, 소속행정기관장, 동장, 보좌·보조기관”을 “구청장, 직속행정기관장, 사업소의 장, 동장, 보좌·보조기관”으로 하고

제2항의 본문중 “소속행정기관장”을 “직속행정기관장”으로 하며

제3항 본문중 “구청장, 동장은”을 “구청장, 직속행정기관장, 사업소의 장, 동장은”으로

제7항 본문중 “구청장, 소속행정기관장, 동장, 사업소의 장은”을 “구청장, 직속행정기관장, 사업소의 장, 동장은”으로 한다.

제6조 제2항 본문중 “소속행정기관장, 동장 또는 보좌·보조기관”을 “직속행정기관장, 사업소의 장, 동장 또는 보좌·보조기관”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의 본문중 “보건소는 보건행정과장, 동에 있어서는”을 “보건소는 보건행정과장, 사업소는 관리업무담당주사, 동에 있어서는”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1조(목적)</p> <p>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사하구 공인 (소속행정기관, 동 및 기관장의 보좌·보조기관과 회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p> <p>----- ----- (직속행정기관, 사업소, 동 및 기관장의----- ----- ----- ----- -----</p>
<p>제2조(공인의 비치사용)</p> <p>① 구청장, <u>소속행정기관장</u>, 동장, 보좌·보조기관 및 회계 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p> <p>②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u>소속행정기관장</u>, 사업소의 장, 동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은 <u>소속행정기관장</u>, <u>동장</u>, <u>사업소의 장</u>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p> <p>③ 구청장, <u>동장</u>은 그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민원실 전용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p>	<p>제2조(공인의 비치사용)</p> <p>① -----, 직속행정기관장, 사업소의 장, 동장, ----- ----- -----</p> <p>② ----- -----직속행정기관장, ----- ----- ----- -----직속행정기관장, 사업소의 장, 동장의 ----- -----.</p> <p>③ 구청장, 직속행정기관장, 사업소의 장, 동장은 ----- ----- ----- -----</p>

현행	개정
<p>④~⑥ (생략)</p> <p>⑦ 구청장, 소속행정기관장, 동장, 사업소의 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관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p>	<p>④~⑥ (현행과 같음)</p> <p>⑦ -----, 직속행정기관장, 사업소의 장, 동장은 ----- ----- -----</p>
<p>⑧ (생략)</p> <p>제6조(공인의 신조개각)</p> <p>① (생략)</p> <p>② 소속행정기관장, 동장 또는 보좌·보조기관이나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민원봉사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행정기관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그 사유를 상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⑧ (현행과 같음)</p> <p>제6조(공인의 신조개각)</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직속행정기관장, 사업소의 장, 동장 또는 ----- ----- ----- ----- -----</p>
<p>제13조(공인의 관수자)</p> <p>① 공인의 관수자는 구 본청에서는 소관 실과장, 보건소는 보건행정과장, 동에 있어서는 주무가 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 및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과 현장민원실에서 중계민원 처리를 위한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p>	<p>제13조(공인의 관수자)</p> <p>① ----- -----과장, 사업소는 관리업무담당주사,동에----- ----- -----</p>
<p>②~③ (생략)</p>	<p>②~③ (현행과 같음)</p>